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위험성평가 적용 등 >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35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현행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이행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 설계·운영 사업주 포함 등	3

I. 제안경위

2026년 2월 11일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달 플랫폼 기반 기업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배달앱 알고리즘은 주행 중 배달 라이더에게 스마트폰 조작(배달 진행 상황, 어려움 여부 등 질문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고객 등급·평점, 일감 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과속 및 위험 운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일감 배정, 등급·평점, 가격 결정 등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

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함)의 설계 및 운영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36조).

Ⅲ. 검토의견

1. 현행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이행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 설계·운영 사업주 포함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이행 대상에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사업주를 포함시키고,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시키는 내용임(안 제5조 및 제3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u>자</u>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u>사람</u>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 ----- ----- ----- --- <u>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u> ----- ----- ----- ----- ----- ----- ----- <u>사람을 포함한다.</u>

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36조에서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자동화 의사결정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계·운영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

----근로자의 작업행동,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면서 관련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제36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장에 잠재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유해·위험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를 파악하도록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의 사업주에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자를 포함시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에도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포함시키고 있음. 이는 배달 라이더의 업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시스템인 배달앱 알고리즘의 부작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배달 라이더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 제5조의 사업주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제78조에1) 따

1)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개정안의 “근로자의 노무 제공 방식이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사업주”와 같은 의미라 볼 수 있고, 현행법 제78조에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거나 일하는 시간·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의 근로자 공유 등 기존 방식의 위험성평가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